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- 85호
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27호(2021.5.13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’ 되고 ‘2021년 1차 공공기획(신속통합기획) 대상지’ 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「같은 법」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(변경)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 (변경)

구분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1) 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	51,604.27㎡	• 서울시 ‘신속통합기획’ 대상지로 선정된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선정조건(구역경계 정형화 등) 반영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	1) 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	60,380.50㎡	
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
구분	권리산정기준일	비 고
기정	2021. 5. 13.	•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(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)
변경	2022. 2. 24.	

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.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(변경 없음)

－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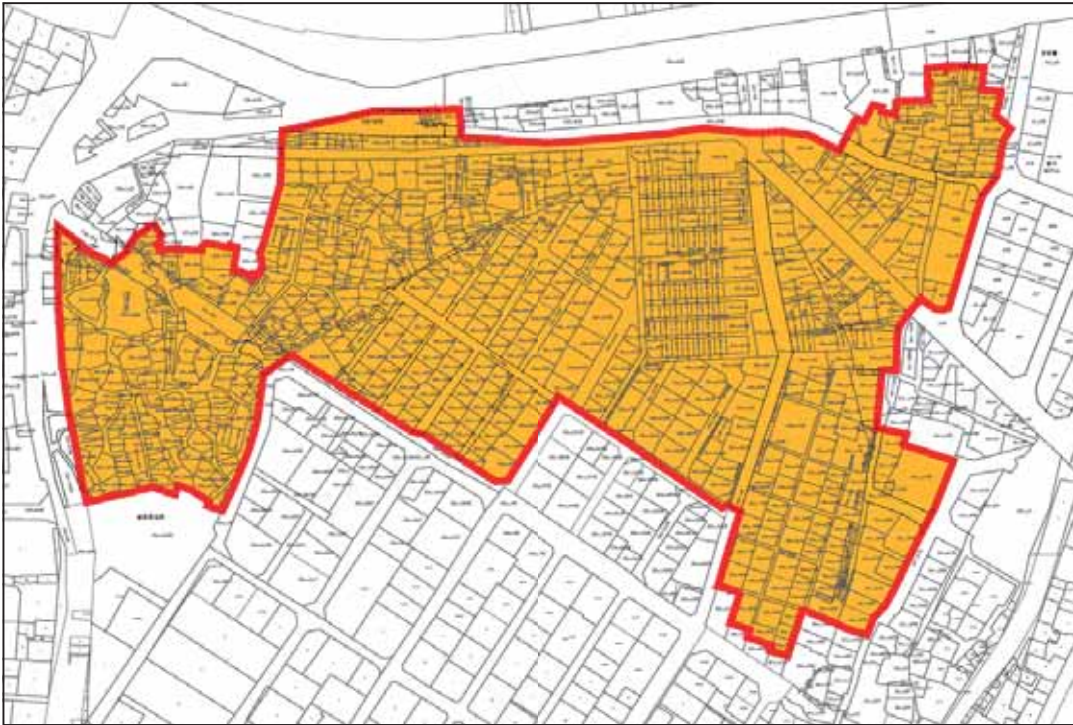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5. 관계도면(변경) : 붙임 참조

6. 안내사항 :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9) 및 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[불입] 행위제한 지역도면

○ 기 준



○ 변 경

